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29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9.

발의자 : 이학재 · 김현아 · 박명재
하태경 · 서영교 · 유승민
김명연 · 정유섭 · 황영철
주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공공장기임대주택의 유지·보수 비용, 편의시설 설치·보수 비용,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사업 등이 1년 단위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중장기 사업목표 수립이 불가능하고 충분한 공사기간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며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(안 제3조, 제3조의2 신설).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

2.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

3. 노약자·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
5.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제3조(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3조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</u></p> <p><u>2. 노약자·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 지원</u></p> <p><u>3.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</u></p> <p><u>4.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</u></p> <p><u>5.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</p>	<p><u>제3조(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 방향 및 목표</u></p> <p><u>2.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노약자·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4.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5.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</u></p>

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
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
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
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
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
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
하여야 한다.

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
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조의2(삶의 질 향상을 위한
국가 등의 지원) 국가 및 지방
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
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
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
한다.

<신 설>